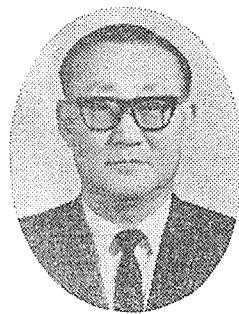


## 論壇



# 科學技術學會의 補助育成方向

科學技術處 企劃管理室長 宋 孝 貞

## 1. 引言

第2次世界大戰後西獨의復興이漸增하는共產勢力에對抗하기爲한美國의西歐復興政策(Marshall plan)에依하였다고하지만廢墟의잿더미위에서오늘날과같은高度의成長을短時日內에다시금이룩할수있었던것은그實에있어서그들의蓄積된科學技術의底力에基因하였든것이다.工場과施設은破壞되었지만이를다시復舊할수있는人的能力과科學技術의底力은潛在해있었던것이다.高度의經濟成長을이끌어가는것은工場이나資本設備가아니라科學技術과人的能力인것이다.

科學技術振興을爲한中央行政機構로서의科學技術處는科學技術振興策의一環으로科學技術團體 및學會의補助育成을그基本目標의하나로設定하고있다.1968年度大統領閣下의科學技術處初度巡視 때에도科學技術團體 및學會의育成方向으로質的水準의向上과自立을促進하는補助政策을實踐할것을報告드린바있다.政府가科學技術團體 및學會에對하여財政의으로補助하고育成策을實施하고있는目的은民間의科學技術研究活動을促進獎勵함으로써科學技術能力을蓄積培養하기爲함인것이다.補助의目的이直接的인效果나어떤特定한反對給付를要求하는것이아니라앞으로結實될科學技術

의開發이라는열매를爲하여밀거름을주는것과같은促進의이고助長的인데그目的이있는것이다.

## 2. 學會補助의 方向

科學技術處豫算에策定된FY68年度科學技術學會補助金은1,500萬원이며,FY69年度豫算에는當初에2,200萬원을要求하였으나現年度水準인1,500萬원으로削減調整되었다.國家總歲出豫算에對하여科學技術關係豫算이차지하는比率은不過4%程度인데이中에서다시科學技術學會育成을爲한補助金이차지하는比率은極히零細함은두말할나위도없다.이와같은零細한豫算으로補助政策의實效를거둘수있으리라는것은期待할수없으나國家의財政形便을考慮할때不可避하다하겠으며要는零細한豫算이나마效率의으로使用하는길을摸索해야할뿐이다.

科學技術處에서實施하고있는學會補助의方向은科學技術調查研究活動의促進과質的水準의向上을爲하여論文發表 및學會誌發刊을補助하고國際學會加入과科學技術關係國際會議參席을支援하는方向으로補助政策을實施하고있으나豫算은極히制限되어있는反面에補助對象學會는總學會에達하고있어여기에難點이있는것이다.따라서科學技術處는다음과같은學會育成補助金交付要領을作成하고이基準에따라補助政策을實施하

고 있다.

(1) 交付對象 및 支援事業

(1) 科學技術에 關한 調査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國內學會로서 그 實績이 顯著하고 水準이 높은 學會를 對象으로 한다.

(2) 科學技術分野中 類似한 分野의 學會가 併立되어 있는 境遇個別的 活動을 支援 하지 않고 相互 協同的 活動을 為하여 支援한다.

(3) 學會補助金의 交付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과 같다.

- 가. 學會雜誌發刊
- 나. 學術發表會
- 다. 國際學會加入
- 라. 外國學術誌上 論文發表

(2) 交付基準

補助金의 交付는 政府의 科學技術開發基本施策에 副應하는 學會로서 比較的 自立度가 높은 學會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補助한다.

(가) 理學部門과 工學部門의 學會에 優位를 주되 特히 基礎科學部門으로서의 物理化學과 工學部門의 化工, 機械, 電氣 및 電子, 金屬, 土木部門을 重點으로 支援한다.

(나) 補助金 交付額의 策定基準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 查定한 것을 參酌하되 다음과 같은 基準에 依하여 調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① 學會誌發刊費

學會誌發刊 補助에 있어서는 過去의 刊行 實績과 質的水準을 參酌한다.

② 學術發表會費

申請分은 基準으로 過去의 開催實績과 質的水準을 參酌하되 年 2回 以上的 認定하지 아니한다. 但 保健部門에 있어서는 年 1回만 認定한다.

③ 國際學會加入會費

具體的 證憑에 依하여 實費를 認定하되 加入에 따른 旅費等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④ 當該事業이 當會計年度內에 終了될 수

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3) 科學技術關係國際會議 參加旅費의 支給

科學技術處는 國際技術協力의 強化를 為하여 科學技術關係國際會議 參加旅費로 FY 68豫算에 23名分에 對한 11,688,900 원을 策定하였고 FY 69豫算에도 亦是 23名分에 對한 11,774,500 원이 查定되었다. 同旅費의 效率의 執行을 為하여 科學技術處例規로 制定된 “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參加旅費 支給要領”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基準에 따라 國際會議參加에 所要되는 旅費, 日費, 宿泊料 및 準備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가. 支給對象

參加旅費의 支給對象은 다음 各號의 1에 當하는者로서 科學技術處長官이 參加費支給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者로 한다.

1. 研究業績이 있는 科學者
2. 科學技術分野에 專門의인 技術이 있다 고 認定되는 者
3. 科學技術에 關한 教育에 從事하는者
5. 科學技術分野에 從事하는 公務員

나. 支給事由

科學技術處長官은 다음 各號의 境遇豫算의 範圍內에서 參加旅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할 수 있다.

1. 國際會議主催國 (國際機構主體인 境遇를 包含한다)에서 全혀 參加旅費를 負擔하지 아니하는 境遇
2. 國際會議主催國이 參加旅費의 一部만을 負擔함으로써 參加者에게 旅費의 補助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다. 其他

參加旅費의 支給基準, 申請節次, 支給審查 및 支給額의 受領節次 等은 同例規의 定하는 바에 따른다.

마라서 科學技術學會는 學會誌發刊, 學術發表會 開催, 國際學會 加入, 外國學術誌上 論

文發表를 爲하여 財政의 補助를 받을 수 있는 以外에 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參加旅費의 恵澤을 받을 수 있다.

### 3. 補助管理

科學技術學會에 對한 補助金의 支給은 補助金管理法 및 同施行令, 科學技術處에서 制定한 科學技術 學會育成 補助金 交付要領 그리고 豫算會計法에 따라 支給하고 있으나 이의 效率的인 補助管理를 爲하여 補助金의 審查, 決定 및 補助事業의 統制에 對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 (1) 補助金의 審查決定

科學技術處에서 制定한 “科學技術學會 育成 補助金交付要領”에 依하면 學會補助金 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는 交付申請書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提出하고 同聯合會는 申請된 個別事業에 對한 意見書와 交付額을 查定하여 科學技術處에 一括提出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學會補助에 對한 第一次의인 先審權을 가지고 있는것이 된다.勿論 同聯合會의 意見과 查定結果가 決定的인 것은 아니며 다만 參酌하는 것에 不過하지만 科學技術團體를 總括하는 同聯合會를 育成하고 補助事業選定의 慎重을 期한다는趣旨에서 同聯合會에 第1次의인 先審權을 委任한 것이라 할수 있다.

科學技術處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意見과 查定結果를 參酌하여 關係法規에 依據查定한 後 科學技術處에 構成되는 審查機構의 協議를 거쳐 補助金의 交付與否와 그 限度額 및 交付條件等을 決定하게 된다.

그리나 여기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點은 補助對象學會와 補助對象事業을 選定하는 基準이 未備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學會補助의 一貫性있는 뚜렷한 方向이 提示되지 않고 補助對象의 選定에 있어 優先順位와 質的인 面이나 價值性의 問題가 一律的으로 다루어질 憂慮가 多分히 있는 것이다. 科學技術處에서 作成한 “學會補助金支給調整基準”에서는 學會補助의 支給對象을 科學技術關係 國內學會의

(但 協會 및 研究所는 除外) 學會誌發刊, 學術發表會, 國際學會加入 및 外國學術誌上 文發表費에 限하고 補助의 方向은 政府의 學技術開發基本施策에 副應하는 學會로서較的 自立度가 높은 學會에 對하여 理學部門과 工學部門의 學會에 優位를 주되 特히 基礎科學部門으로서의 物理, 化學과 工學部門의 化工, 機械, 電氣 및 電子, 金屬, 土木部門을 重點支援한다고만 規定하고 있다.勿論 여러 차례의 審議查定過程을 通하여 이러한 問題가 慎重히 다루어 지겠지만 學會補助의 뚜렷한 方向을 提示하는 意味에서라도 對象選定의 具體的인 基準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補助事業의 統制

補助金이 交付되면 補助事業者는 法令의 規定, 補助金交付決定의 內容과 條件, 또는 法令에 依據한 科學技術處長官의 處分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誠實히 그 補助事業을 遂行하여야 하며 그 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事情의 變更으로 補助事業內容을 變更하거나 補助事業에 所要되는 經費의 配分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또한 事情의 變更으로 그 補助事業을 引繼, 中斷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勿論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要한다. 그리고 補助事業者는 科學技術處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助事業의 途行狀況 및 實績을 報告하여야 하며 會計年度가 終了한 때에도 亦是 報告하여야 한다. 이 補助事業實績報告書에는 그 補助事業途行에 所要된 經費를 明白히 한 計算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그리고 補助金에 對하여는 別途의 計定을 設定하고 自體의 收入 및 支出을 明白히 区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其他 科學技術處長官은 效率的인 補助金 management를 爲하여 補助事業者에 對한 命令取消 監查權을 發動할 수 있음은勿論이다. 그리고 科學技術處長官은 이러한 統制事項을 交付條件에 明示하여야 할 것이다.